

KWDI 이슈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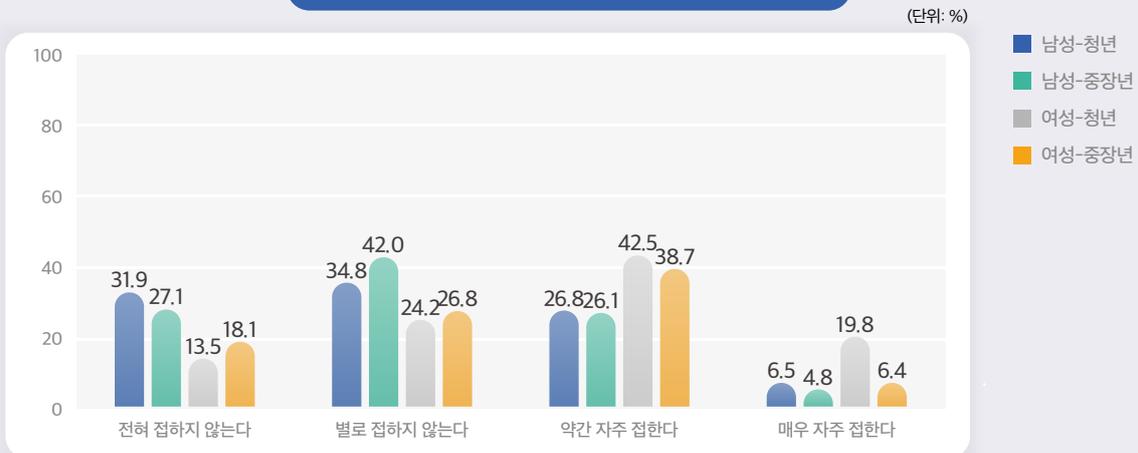
수행과제명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III): 외모강박과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김동식 연구위원 (Tel: 02-3156-7156 / E-mail: dskim@kwidimail.re.kr)

미용성형 경험과 사전 동의 및 정보권 침해로 인한 부작용 및 정신건강 위험 실태

초록

- 미용성형 광고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성형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거나 실제 미용성형을 경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본 실태조사에 참여한 여성 중에서 39.4%가 미용성형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남성 중에서 16.6%가 경험한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임. 특히, 여성청년층의 경우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수가 미용성형을 경험하였음.
- 미용성형 경험자 중에서 미용성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혹은 전혀 받지 못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으며, 관련 정보도 실제 수술/시술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지 않은 경우는 40~50%대로 낮은 수준이었음. 또한 수술/시술 과정에서 사전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동의(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행위가 있었던 경험들도 30~40%가 있었음. 문제는 수술/시술 담당자에 의한 사전 정보 습득이나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거나, 혹은 비동위 수술/시술 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의료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부작용은 우울증과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음.

미용성형 광고를 접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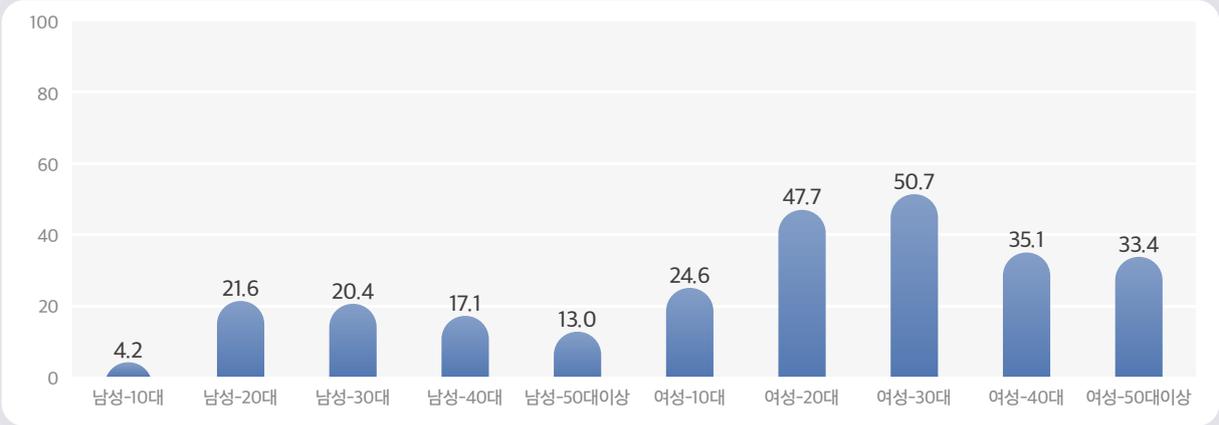
미용성형 광고를 접한 이후 미용성형 경험

(단위: %)



미용성형 경험을

(단위: %)



미용성형 수술/시술 과정에서 사전 동의

(단위: %)

구분		경험함	경험하지 않음	모르겠음	전체
수술/시술 전에 위험성에 대해 안내를 받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과정이 없었다	시술	30.8	45.6	23.6	559
	수술	41.5	38.4	20.1	160
수술/시술 상담과정에서 의료인으로부터 다 른 신체부위에 관한 미용성형을 권유 받았다	시술	30.1	60.9	9.0	559
	수술	31.4	36.5	5.0	160
수술/시술 상담과정에서 의료인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유로 더 비싼 수술 방법을 권유 받았다	시술	24.4	66.8	8.8	559
	수술	15.1	74.8	10.1	160
수술/시술 상담과정에서 의료인으로부터 효과(성과)가 좋다는 이유로 더 비싼 수술방법을 권유 받았다	시술	33.1	58.7	8.2	559
	수술	18.9	74.2	6.9	160
수술/시술 이후에 보니 다른 신체부위도 수술되어 있었던 적이 있다	시술	7.5	86.0	6.4	559
	수술	6.9	88.7	4.4	160
전체					719

1. 배경 및 문제점

- ① 지난 20년간 미용성형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였고, 성형외과 및 피부과 전문의의 수도 동반 증가하였음.
 - ▶ 국제미용성형 관련 ISPAS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용성형과 관련하여 수술적·비수술적 조치 건수가 약 98만 건으로, 미국, 브라질,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순위임.
 - ▶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 유치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2018년 각각 약 6.7만 건과 6.4만 건으로 2009년 대비 약 24배, 약 11배 증가함.
 - ▶ 지난 10년간 미용성형 관련 전문과목인 성형외과와 피부과 전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전체 과목 중 성형외과 전문의는 2.43%, 피부과 전문의는 2.53%를 차지함.
- ② 미용성형을 통해 외모 및 체형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중장년층, 그리고 남성에서도 늘어나고 있음. 미용성형은 인위적으로 의료적 개입을 통해 체형 및 외모 변형을 이루는 만큼, 사전에 관련 정보 습득 및 동의 절차를 통한 이해는 미용성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있어 당연한 권리이며, 이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중요함.
- ③ 성형외과 전문의의 68%, 피부과 전문의의 82% 정도는 의원급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만큼 접근성은 우수하나 사전 정보 제공 및 사전 동의를 통한 안전권과 건강권을 위한 절차는 간과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음을 많은 언론을 통해 보고되고 있음.
- ④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용성형 경험 정도와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 및 정보권 침해적 실태를 파악하고, 부작용 피해 및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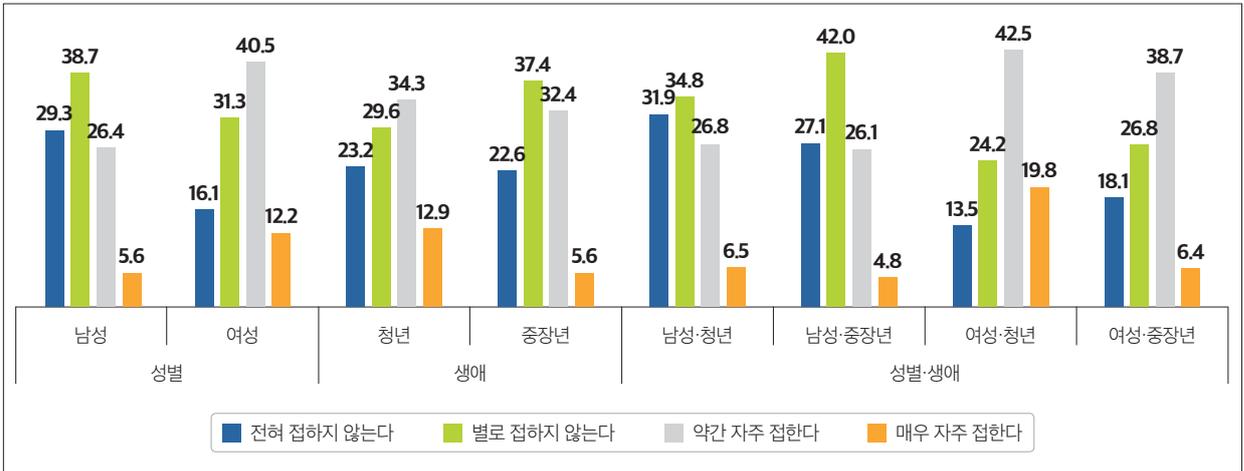
2. 조사 및 분석결과

- ① 조사 대상 및 방법
 - ▶ 15~64세 모집단 기준(2019.7), 성별·연령·지역별 인구구성에 비례 표본 할당
 - ▶ 최종 2,585명 조사 참여
- ② 분석 결과
 - (1) 미용성형 광고 노출 정도 및 노출 경로와 미용성형에 대한 생각·경험에 대한 영향
 - ▶ 평소 미용성형 광고를 어느 정도 접하는지 물어본 결과,
 - 전체의 33.3%는 '약간 자주', 8.8%는 '매우 자주' 접한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은 과반이 조금 넘는 52.7%가 약간 혹은 자주 접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남성의 응답률 32.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여성 안에서도 여성청년층에서 '접한다'는 응답률이 62.4%로 과반 이상인데, '매우 자주 접한다'는 응답만 보더라도 여성청년의 19.8%가 이에 해당됨. 이는 여성중장년, 남성청년, 남성중장년이 모두 6%대 이하의 응답률인 것과 비교할 때, 3배 이상의 차이임.

<그림 1> 미용성형 광고를 접한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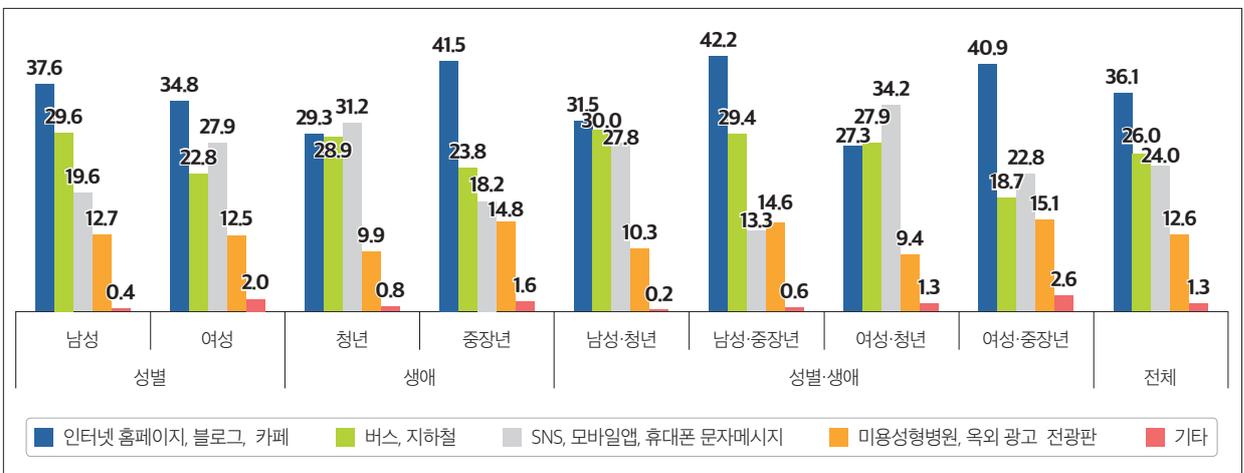


▶ 미용성형 광고를 접하는 경로를 물어 본 결과,

-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가 36.1%로 가장 많았음. 이어 '버스, 지하철'이 26.0%, 'SNS, 모바일 앱, 휴대폰 문자'가 24%, '미용성형 병원, 옥외 광고, 전광판'이 12.6%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미용성형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주로 온라인(해당 홈페이지 사이트나 다양한 소셜커뮤니티)임을 알 수 있음. 특히, 여성청년은 SNS 등 소셜커뮤니티를 통한 미용성형 광고를 접하는 경우가 34.2%로 가장 많은데 반해, 중장년의 경우 남녀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많았음.

<그림 2> 평소 미용성형 광고를 접하는 주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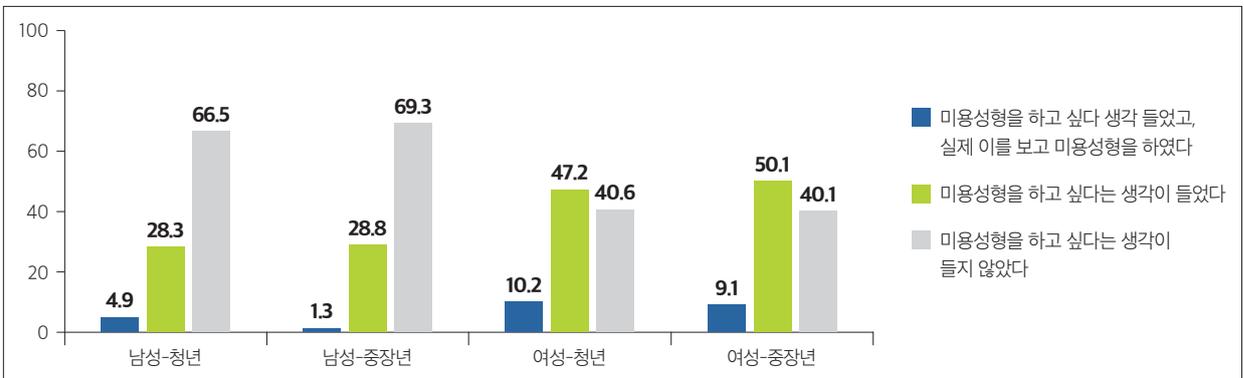
(단위: %)



- ▶ 성형광고를 접한 이후 미용성형을 하고 싶은 생각이나 실제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물어본 결과,
 - ‘성형광고를 접해 보았다’는 응답자(1,996명)의 6.4%는 실제 광고를 접하고 난 후 미용성형을 하였고, 39.2%는 ‘미용성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응답함. 이를 보면, 거의 45% 정도가 미용성형 광고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미용성형 광고를 접하고 실제 미용성형을 경험한 경우는 여성청년이 10.2%로 가장 많았고, 여성중장년은 이보다 소폭 낮은 9.1%, 남성청년은 4.9%, 남성중장년은 가장 낮은 1.3%로 나타남. ‘미용성형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은 여성이 48.8%로 남성 28.6%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았음.
 - 여성청년의 경우 미용성형을 경험하였거나, 하고 싶은 생각을 한 경우를 모두 고려하면, 과반이 넘는 57.4%가 실제 미용성형 광고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미용성형 광고를 접한 이후 미용성형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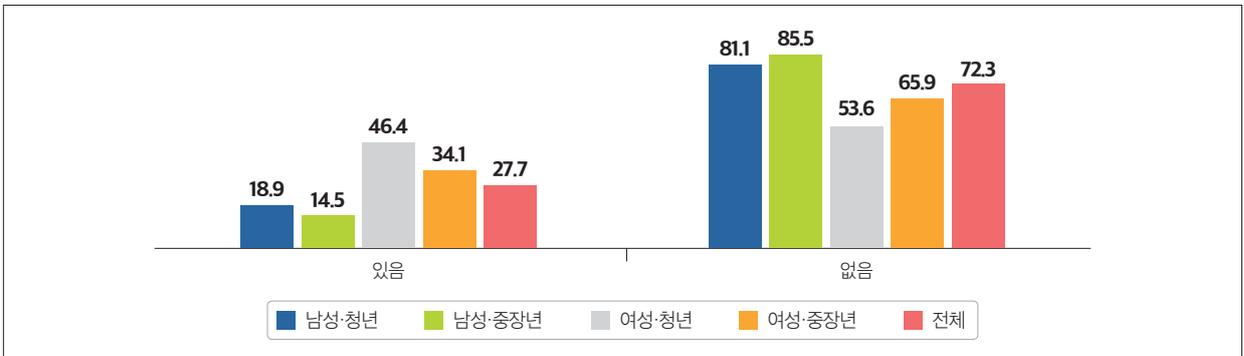


(2) 미용성형 경험과 관련 영향 요인

- ▶ 지금까지 미용성형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 여성청년은 과반에 가까운 46.4%가 ‘미용성형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이보다는 작지만, 여성중장년은 34.1%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함.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남성청년은 18.9%, 남성중장년은 14.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미용성형을 한 신체부위도 눈, 코, 이마, 턱, 안면윤곽, 가슴, 허리, 엉덩이 등 매우 다양했는데, 이러한 신체부위마다 경험률도, 그리고 경험 신체부위수도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유의미하게 많았음.

<그림 4> 평생 미용성형 경험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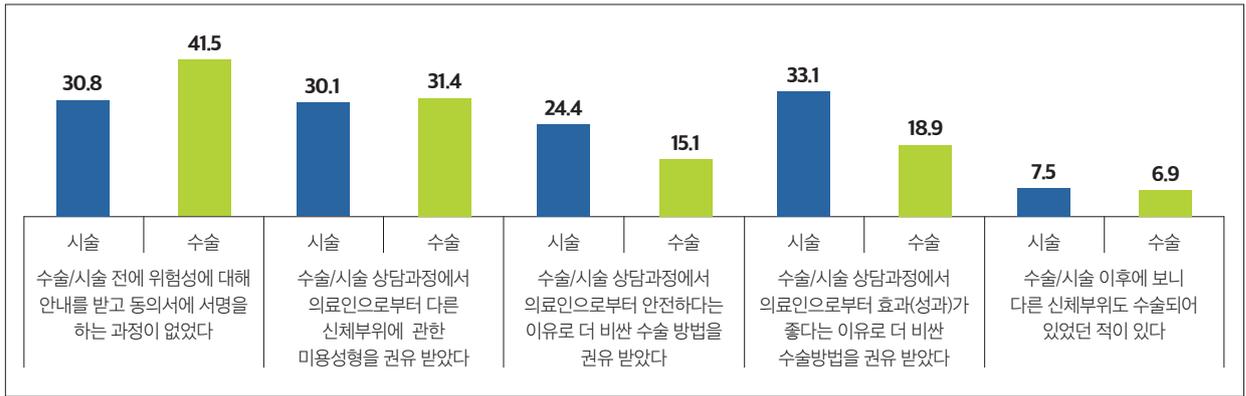
- ▶ 미용성형에 지출한 비용과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를 물어본 결과,
 - 지금까지 미용성형 경험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물어본 결과, 100만원 미만이 53.0%로 가장 많았음. 이어서 100~300만원은 26.5%, 300~500만원은 10.7%, 500~1,000만원 미만은 6.4%,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은 3.6%이었음.
 - 미용성형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19.4%는 ‘매우 부담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조금 부담이 되었다’는 응답도 61.9%가 있었음. 이는 사회계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매우 부담이 되었다’는 응답은 하위계층에서 34.6%로, 이는 중상층이 16.7%인 것과 비교할 때, 거의 2배 가량 차이였음.
- ▶ 미용성형 경험의 영향 요인
 - 특히, 실제 체질량지수(BMI,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체형이 크고 살찐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체형/체중을 왜곡하고, 또한 외모 전반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미용성형의 경험률도 높았음. 또한 가족이나 친구/동료로부터 외모의 중요성이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을 받은 빈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 이뇨제/설사제 등과 같이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 및 외모 관리를 한 적이 있는 경우 미용성형의 경험률도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음.
 - 이외에도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별화된 외모에 대한 내면성이 강할수록, 외모에 대해 타인을 많이 의식할수록, 체중(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비만인에 대한 편견이 강할수록, 우리사회의 외모 기준이 있고 그로 인한 외모 불안감이 높을수록, 미용성형 경험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음.

(3) 미용성형 관련 사전 정보 습득과 사전 동의

- ▶ 미용성형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누락된 정보는 있었는지, 누구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았는지 살펴본 결과,
 - 미용성형을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필수 정보라고 할 수 있는 7가지 항목(시술/수술 비용, 제공자, 전문 자격, 방법, 부작용, 통증, 부작용시 조치 등) 중에서 수술의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정보를 ‘담당(시술)의사로부터 직접 제공 받았다’는 응답은 65.4%로 가장 많았음. 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의 정보는 담당의사를 통해 제공 받은 경우는 40~50% 수준이었음. 즉, 과반 이상은 담당의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였거나, 아예 어느 누구로부터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였음. 시술의 경우는 담당의사로부터 정보 습득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시술자의 전문 자격이나 부작용 및 이후 조치 등에 관한 정보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20~30%로 높았음.
- ▶ 미용성형 시행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요구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 ‘수술/시술 전에 위험성에 대한 안내를 받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응답이 시술 경험자의 경우 30.8%, 수술 경험자는 41.5%가 ‘그렇다’고 응답함.
 - ‘수술/시술 상담과정에서 의료인으로부터 다른 신체부위에 관한 미용성형을 권유 받았다’는 경험도 시술 경험자는 30.1%, 수술 경험자는 31.4%, ‘수술/시술 상담과정에서 의료인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유’로 혹은 ‘효과(성공)가 좋다는 이유’로 더 비싼 수술방법을 권유 받았다는 응답도 시술 경험자는 각각 24.4%와 33.1%, 수술 경험자는 각각 15.1%와 18.9%가 있었음. ‘수술/시술 이후에 보니 다른 신체부위도 수술되어 있었던 적이 있다’는 응답도 시술 경험자는 7.5%, 수술 경험자는 6.9%가 있었음.

<그림 5> 미용성형 시술수술 과정에서 비동의 및 부당한 행동 경험

(단위: %)



(4) 미용성형 이후 부작용 경험과 사전 정보 제공자와의 연관성

- ▶ 미용성형 이후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 미용성형 경험자 중 9.1%가 관련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함.
 - 이러한 부작용 경험은 미용성형 시술자(담당의사)로부터 사전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다시 말해서, 정보 제공자가 간호사이거나 상담사 혹은 어떤 제공자도 없었던 경우에는 이들 간에 소폭의 차이는 있었지만, 사전 정보 제공자가 담당의사인 경우와 비교할 때, 미용성형에 따른 부작용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특히, 시술/수술 제공자(담당의사)의 자격 및 전문성에 대한 정보와 시술/수술 이후 부작용 및 관련 조치에 관한 정보를 담당의사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는 간호사나 상담사 혹은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를 받지 못했던 집단에 비해 부작용 피해 경험률이 유의미하게 낮았음.
 - 이를 통해 볼 때, 사전 정보를 누가 제공하느냐, 그리고 관련 정보에서 실제 부작용과 연관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느냐 등은 시술/수술의 안전성과 연관성이 높으며, 이는 실제 환자의 수술/시술 이후의 부작용 피해 경험과도 연관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1> 부작용 피해 경험과 사전 정보 제공자

(단위: %, 명)

구분	정보제공자	경험함	경험하지 않음	X ² (p)	전체
나는 수술/시술 전에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았다	의사	6.8	93.2	2.22	223
	간호사/상담사	10.3	89.7		437
	없음	8.5	91.5		59
나는 누가 수술/시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수술/시술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았다	의사	7.8	92.2	0.79	258
	간호사/상담사	9.7	90.3		370
	없음	9.9	90.1		91
나는 수술/시술을 하는 의사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등에 대해 수술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았다	의사	4.6	95.4	6.73 (*)	196
	간호사/상담사	10.8	89.2		289
	없음	11.1	88.9		234
나는 수술/시술을 하는 의사로부터 수술방법 및 그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다	의사	7.0	93.0	3.60	328
	간호사/상담사	11.4	88.6		283
	없음	10.1	89.9		108

구분	정보제공자	경험함	경험하지 않음	X ² (p)	전체
나는 수술/시술을 하는 의사로부터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았다	의사	6.7	93.3	3.76	271
	간호사/상담사	9.6	90.4		301
	없음	12.2	87.8		147
나는 수술/시술을 하는 의사로부터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통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았다	의사	6.2	93.8	5.17	292
	간호사/상담사	11.4	88.6		308
	없음	10.1	89.9		119
나는 수술/시술을 하는 의사로부터 수술 이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조치(치료 등)를 약속 받았다	의사	6.1	93.9	7.66 (*)	246
	간호사/상담사	8.1	91.9		248
	없음	13.3	86.7		225
전체		9.1	90.9		719

*p<0.05, **p<0.01, ***p<0.001

(5) 미용성형 관련 정책수요

▶ 미용성형에 대한 과장·허위 광고 금지

- '미용성형을 부추기는 광고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에 대해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어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미용성형 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52.5%)', '영화관에서의 미용성형 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각 54.2%)', '스마트폰 앱, SNS 및 블로그 등 인터넷과 모바일에서의 미용성형 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50.5%)', '개인의 미용성형 사례를 소개하는 유튜브 운영은 금지되어야 한다(49.1%)', '미용성형 병원의 옥외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44.5%)' 순으로 필요에 대한 동의율이 높았음.

▶ 청소년의 미용성형 규제

- '청소년의 기형 교정, 의학적·심리적 안녕을 돕는 시술 등을 제외한 모든 미용성형 수술은 금지되어야 한다'에 대해 과반이 조금 넘는 57.2%가 동의함. 그러나 나머지 '청소년의 미용성형 전에는 반드시 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와 '청소년의 미용성형에는 부모(보호자)의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미용성형 상담 후에는 숙려기간(생각할 시간)을 두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88% 정도가 동의함.

▶ 미용성형에 대한 안전성 강화

-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대다수가 동의를 하였음. 즉, '미용성형 전에 담당 시술의(의사)와의 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89.8%, '담당 시술의(의사)는 소비자에게 미용성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90.5%, '담당 시술의(의사)는 시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는 90.7%,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 부위에 대해 미용성형 수술한 경우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90.9%, '소비자가 지정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미용성형 수술을 진행한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90.7%, '미용성형에 따른 의료사고와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89.2%가 각각 동의함.

3. 정책제언

④ 미용성형에 관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

- ▶ 미용성형 광고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기존의 신문, 현수막, 전광판, 교통수단 내외부 이외에도 인터넷 광고를 비롯한 최근 스마트폰 어플(영상, 음성 포함)에서의 허위 혹은 과대 정보가 없는지 지금 보다 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함.
- ▶ 더 나아가 사전 심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허위·과대 광고가 인터넷을 통해 게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이러한 위법한 광고를 게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처벌하고, 실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는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필요함.
- ▶ 아울러 사전 심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료법」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데, 위원은 동조 5항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이외 소비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음. 여기 “7.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미용성형은 여성과 연관성이 많은 만큼, 젠더 전문가도 본 위원회의 위촉 대상으로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④ 미용성형 위험성 및 관련 상황에 대한 사전 고지·동의 의무화

- ▶ 미용성형은 분명 의료적 개입이 필연적이므로, 위험성과 시술·수술 과정에서의 필수 정보는 반드시 소비자(환자)에게 사전에 고지되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은 필요함. 이를 어기고 진행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락하거나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주치의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다른 의료인 혹은 비의료인이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함.
- ▶ 이러한 상황이 의료현장에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함. 이를테면,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이 진행되지 않는지부터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환자에 대한 유인 수술을 하지 않는지, 수술과정이나 회복과정, 부작용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에 관한 조치와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상하지 못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④ 미용성형의 부작용 피해에 관한 통계 구축 및 개선 목적의 적극적 활용

- ▶ 미용성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성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현 상황에서 문제 지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이를 위해서는 통계구축을 위한 통계정보전달체계 마련과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평가추진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건강증진과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청소년정책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